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재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0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김재형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기대, 김기덕,  
김수규, 김정태, 김제리,  
김종무, 김평남, 김혜련,  
문장길, 박기열, 박기재,  
박상구, 박순규, 성흠제,  
송명화, 송아량, 양민규,  
이광호, 이상훈, 이정인,  
임종국, 전석기, 정진술,  
최 선, 최정순, 한기영,  
황규복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미비되어 있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, 배설물 처리, 맹견의 보험가입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등록대상 동물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함.(안 제7조 3항)

나. 맹견의 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.(안 제7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)”을“(등록대상동물의 사육·관리 또는 출입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·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·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)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) ①·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7조(등록대상동물의 사육·관리 또는 출입 제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·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·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)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7조의2(맹견의 관리)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7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u></p>